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2
----------	------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의의원 : 도일용 의원, 김보경 의원

1. 제안이유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삶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교육의 대상,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사업의 범위·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의 대상) 인성교육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군 및 그 하부기관, 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 등의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등의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성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정산·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